##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17 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・이학영・이원택

어기구 • 윤준병 • 주철현

정을호 • 박희승 •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,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 임(안 제3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낙농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및 낙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낙농진흥계획의               | 수립) | 1 | 제3조(낙농진흥계획의 수립) ①                 |
|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|     |   |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|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| <u>농가 및 낙농관련단체 등의 의</u>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| 견을 들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 |     |   | 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| 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